

편집규정

1. 원고의 제출 접수와 보관

- 가. 본회 회원은 자원환경지질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. 그 내용은 국내외 다른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
- 나. 원고의 형식 및 투고절차는 투고규정에 따른다.
- 다. 투고된 원고의 접수 년, 월, 일을 기록하고, 원고를 보관한다.
- 라. “토론”원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그 원고를 상대편 저자에게 보여주고 그에 대한 회답 원고를 청한다.
- 마. 편집위원회는 회원과 비회원에게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.
- 바. 비회원이 원고를 제출하였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처리한다.

2. 원고의 심사와 채택

- 가. 접수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- 나.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토의하여 선임한다.
- 다. 심사위원 선정은 2인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결과가 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할 수 있다.
- 라. 심사의뢰 시 원고와 함께 학회에서 정한 심사의뢰서(판정서)를 함께 우송한다.
- 마. 심사기간은 3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, 늦어질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대응조치를 강구한다.
- 바. 심사위원이 동의할 시에는 심사위원을 저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.
- 사. 채택된 원고는 수정본 제출 시 수정본이 입력된 디스켓(훈글)을 제출해야 한다.
- 아. 편집위원회는 내용의 뜻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투고규정에 맞도록 체제를 수정할 수 있다.
- 자. 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그 이유를 명시한 문서를 첨부하여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.
- 차. 인쇄가 끝난 원고는 저자의 요청이 없을 시는 반송하지 않는다.
- 카. 편집위원회의 게재승인이나 위원장의 게재승인이 확정된 날짜를 게재승인 일로 확정한다.

- 타. 저자의 요구 시 게재승인된 논문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편집위원장 명의로 발행해 줄 수 있다.

3. 논문의 게재와 발행

논문게재 및 순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- 가. 논문게재순서는 편집내규에 명시된 전공분야 순서로 하되 같은 전공분야의 논문은 접수된 순서로 한다.
- 나. 토론은 그 회답을 기다려 가능한 한 동시에 게재하도록 한다.
- 다. 같은 저자의 논문은 같은 호에 두 편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.
- 라. 특별호나 특별한 원고에 대하여는 그 취지에 따라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.
- 마. 학회지는 매년 짝수 달 말일에 발행한다.

4. 교정

- 가. 투고된 원고의 초교는 저자가 하고 재교부터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.
- 나. 초교 때 저자가 원고를 많이 변경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.

5. 원고의 종류

- 가. 논문(Original article); 자원지질학, 환경 및 응용지질학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술연구논문.
- 나. 자료, 해설(Review article); 자원지질학, 환경 및 응용지질학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,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와 해설.
- 다. 강연(Address); 학술총회 및 발표회에서 행하여진 학술강연의 내용.
- 라. 단보(Short note); 연구조사 성과에 대한 간단한 논문.
- 마. 토론(Discussion);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, 보고, 단보에 대한 학술토론.
- 바. 서평(Book review).
- 사. 기타 편집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항.